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160577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16.06.21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4.11.12

dspyo2000@naver.com

[커피코트]

정 보 공 개 서

[(주)피애파트너스]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년 월 일

[(주)피애파트너스]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에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24길31, 804호(성수동2가)

[가맹본부의 대표전화번호] 02-596-0105

[가맹본부의 대표팩스번호] 02-596-0107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02-596-0105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 (<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을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http://ftc.go.kr/data/hwp/20080306_103723.hwp)
(<http://www.ftc.go.kr/laws/laws/laws.jsp?lawDivCd=08>)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주)피애파트너스	커피코트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24길31, 804호(성수동2가)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21. 12. 08	2021. 12. 08	표대섭	02-596-0105	02-596-0107
	법인등록번호	110111-8121339	사업자등록번호	454-86-02489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최근 3년 동안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표대섭 (사내이사)	(주)피애파트너스	커피코트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24길31, 804호(성수동2가)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표대섭	02-596-0105	02-596-0107
표수훈 (감사)	(주)피애파트너스	커피코트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24길31, 804호(성수동2가))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표대섭	02-596-0105	02-596-0107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있습니다.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합병일	주 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 일부를 인수함	(주)커피코트	커피코트	2021.12.24	서울시 성동구 상원1길 26 서울숲A타워 1005호	신현우
	(주)커피나무	커피나무	2024.04.24.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백지연

				73, 6층 S-16호(서교동)	
--	--	--	--	-------------------	--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커피코트]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커피코트	
상 호	커피코트 OO점	
상표(서비스표)		(1 . 9. 지식재산권 참고)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3년	499,075	761,694	-262,619	622,412	-34,188	-39,317
2022년	449,650	672,952	-223,302	437,159	-247,307	-241,787
2021년	255,559	237,073	18,486	0	-1,513	-1,513
※ 당사는 2021년 12월에 설립된 법인입니다.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상기 1)의 매출액과 같습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임원	표대섭	대표이사	2021.12.08.~현재	대표이사	업무총괄

가맹사업 관련임원	표수훈	감사	2021.12.08.~현재	감사	감사업무
--------------	-----	----	----------------	----	------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1	1	6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
 (서비스표)	제40류 제품 사용 및 대가수수	등록일자 2017.02.15	등록번호: 41-0387327	(주)커피코트	2027년 02월 15일
 (서비스표)	제43류 제품 사용 및 대가수수	등록일자 2017.02.15	등록번호: 41-0387328	(주)커피코트	2027년 02월 15일
 (서비스표)	제35류 제품 사용 및 대가수수	등록일자 2017.02.15	등록번호: 41-0387326	(주)커피코트	2027년 02월 15일
 (상표)	제30류 제품 사용 및 대가수수	등록일자 2017.01.11	등록번호: 40-1226690	(주)커피코트	2027년 01월 11일

 (상표)	제32류 제품 사용 및 대가수수	등록일자 2017.01.18	등록번호: 40-1228043	(주)커피코트	2027년 01월 18일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상기 지식재산권의 등록권리자로부터 상표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상표 사용에 대한 권한 일체를 이전받았습니다. -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 검색서비스 (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Ⅱ. 가맹본부의 [커피코트] 가맹사업 현황

1. [커피코트]를 시작한 날 : 2016년 5월 2일

2. [커피코트]의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커피코트	커피코트	신현우	2016.05.02 ~ 2021.03.29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97 부띠크모나코 2403호
(주)커피코트	커피코트	신현우	2021.03.30 ~ 2021.12.24	서울시 성동구 상원1길 26 서울숲A타워 1005호
(주)피앤파트너스	커피코트	표대섭	2021.12.24 ~ 2022.01.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7길 8, 808호
(주)피앤파트너스	커피코트	표대섭	2022.01.06 ~ 2023.12.18	서울시 성동구 상원1길 26 서울숲A타워 1005호
(주)피앤파트너스	커피코트	표대섭	2023.12.19 ~ 현재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 24길 31, 804호(성수동2가)

3. [커피코트] 업종

영업표지	업종	
커피코트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커피	커피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커피코트]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 개)

지역	2023.12.31			2022.12.31			2021.12.31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8	8	0	11	11	0	21	21	0

서울	4	4	0	7	7	0	14	14	0
부산	-	-	-	-	-	-	-	-	-
대구	-	-	-	-	-	-	-	-	-
인천	0	0	0	0	0	0	0	0	0
광주	-	-	-	-	-	-	-	-	-
대전	-	-	-	-	-	-	-	-	-
울산	-	-	-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4	4	0	4	4	0	7	7	0
강원	-	-	-	-	-	-	-	-	-
충북	-	-	-	-	-	-	-	-	-
충남	-	-	-	-	-	-	-	-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	-	-	-	-	-	-	-	-
경남	-	-	-	-	-	-	-	-	-
제주	-	-	-	-	-	-	-	-	-

5. 바로 전 3년간 [커피코트] 가맹점 수 변동 현황

시점	연초	신규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	연말
2023년	11	0	3	0	1	8
2022년	21	0	10	0	0	11
2021년	28	0	0	7	1	21

6. [커피코트]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현황

당사는 [커피코트]외에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바로 전 3년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2021.12.31.	2022.12.31.	2023.12.31.
가맹본부	(주)커피코트	커피나무	20130100418	커피	38/1	25/1	16/0

※[커피나무] 브랜드는 당사가 2024년 04월 24일 부로 (주)커피나무로부터 인수하여 운영 중입니다. 표의 가맹점/직영점 수는 전 가맹본부가 운영하던 내역입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당사의 가맹점사업자 연간 평균 매출액은 직전 사업연도에 6개월 이상 영업한 가맹점 매출액을 1년치로 환산하여 전체 연간 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데 근거 수치로 포함하였으며, POS 매출과 영업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8. [커피코트]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커피코트]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영업 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년	8개	1,902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 바로 전 사업연도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단위:천원, 부가세미포함)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297	297	0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0	0	0	(비공개)
판촉	-	-	-	-	-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민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정 또는 부서	주소	전화번호
국민은행	서울숲지점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125	1599-9999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국민은행]에 [계약 체결 당일까지] 예치 신청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또한 [국민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금예치계약을 이용하고 있어 별도로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커피코트]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해당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11,000]				
가 맹 비	가입비	2,200	매장 오픈 전	오픈 시 소멸	최초 계약 에 한함
	영업비밀 전수비	2,200	매뉴얼 제공 전	제공 시 소멸	
	오픈 전후 지원 경비	1,100	인력 지원 전	지원 후 소멸	
	신규 교육비	5,500	교육 전	교육 후 소멸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총계	[2,000]			
보증금	2,000	계약체결과 동시에 지급	가맹금 미지급, 계약 위반 사유 등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합계	13,000	
가맹비	가입비	2,200
	영업비밀 전수비	2,200
	오픈 전후 지원 경비	1,100
	신규 교육비	5,500
보증금	2,00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은 매장면적(33㎡(10평))을 기준으로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	80,160 이상	8,016 이상	-	-	-
개설 관련비	기계 및 장비	당사	31,020	3,102	설치 전 계약취소	별지1참조
	감리비 및 설계비	당사	아래※2 참고	-	아래 ※1 참조	공사 전 계약취소
	오픈행사비	당사	1,650	-	공사 전 계약취소	
초도물품	당사	18,450	-	입고 당일	발주 전 계약취소	별지1참조
인테리어 시공비 (간판 포함)	협력업체 또는 점주자율	29,040	2,904	해당 업체와 직접 계약	계약에 따름	아래※3 참고

[※1. 인테리어 착공일을 기준으로 개설관련비의 50%,
인테리어 착공 10일 후 개설관련비의 30%,
인테리어 준공일 또는 간판 부착일에 개설관련비의 20%]

- [※2. 감리비 및 설계비는 아래의 각 호에 따라 테리어 착공 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가. 당사의 지정된 협력업체에 시공을 의뢰한 경우 설계비로 1,650천원(부가세포함)
 나. 당사의 지정된 협력업체를 통하지 않고 귀하가 직접 시공한 경우 감리비 및 설계비로 3,300천원(부가세포함)
- [※3. 인테리어의 견적은 매장의 평수, 형태, 층수에 따라 다르며, 철거공사, 외부공사, 가구, 소방공사, 냉난방기공사, 설비공사, 모니터 공사, 방법·전산공사, 전기승압공사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 [※4. 상기의 비용은 면적의 증감에 따라 금액이 증가나 감소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견적은 세부 견적서에 따릅니다. 따라서 상기의 비용은 투자의 예상치를 위해 참고용 견적으로 제시 하였으니, 단순히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귀하의 입지선정에 도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나, 가맹점 입지선정에 대한 법적 의무가 없으며, 입지선정에 대한 최종 책임은 귀하에게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	담당자 배정 → 가맹희망자와 희망 점포 답사 → 현장 확인 → 담당자의 상권현황 설명 및 영업지역 중복여부 확인 → 가맹희망자 면담 → 가맹희망자 최종 결정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만20세 이상을 원칙으로 함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18세 이상을 원칙으로 함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기계 및 장비내역과 초도물품 내역은 별지1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신상품 등 출시에 따라 장비와 물품의 증감이 있습니다.

8) 한편, 귀하는 당사에 가맹금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营业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광고 분담금	가맹본부	실비	광고 시행 전 별도 통지	광고 미시행	광고시행 후	아래※1 참조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분담금	협력업체	전체 수수료의 50%				선택사항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실비	별도통지	교육 미시행	교육실시 후	교육 필요시 지급
로열티	가맹본부	220	익월 5일	월기간 도래 전	월기간 도래 후	아래※2 참조
POS, DID사용료	가맹본부	33 (월단위)	익월 5일	월기간 도래 전	월기간 도래 후	ATS운영프로그램 포함
점포환경개선	당사 또는 인테리어 업체	아래※3 참조	협의	해당업체와의 계약에 따름	해당업체와의 계약에 따름	
지연이자	당사	연15%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급기간 경과 후 익일부터 부담

[※1. 광고분담금은 상품 광고의 경우 당사와 가맹점사업자들이 50:50으로 부담하며, 상품 광고 + 가맹점모집광고는 당사와 가맹점사업자들이 60:40, 가맹점모집광고는 당사가 100% 부담합니다.]

[※2. 당사에 지급해야 할 로열티는 월22만원

[※3. 점포환경개선 시 당사의 귀하의 분담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보수 시작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가맹계약이 종료·해지·영업 양도할 경우 36개월의 기간 중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미상각잔액을 가맹본부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①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은 경우 발생비용의 20%

②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 발생비용의 40%]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

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고 합니다)의 2023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가맹점 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추정금액으로, 2023년에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구입요구품목의 매출액과 해당 품목 구매금액의 차액을 6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 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이 경우 전년도에 구입하여 금년에 공급하는 부분, 금년에 구입하였으나 아직 공급하지 않은 부분, 자체생산품목에 대한 차액가맹금 미포함 등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점과 가맹본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기	비고
위생	주방의 관리 상태와 각종 오염도 관리, 청결 등 위생 상태	분기별 1회 이상	
회계 처리	POS관리, 금전출납부, 매출 및 매입장 등 관리		
기계 및 장비의 관리	기계 및 장비의 사용 전후 관리상태		
물품 등의 관리	물품(원·부자재) 보관상태, 냉동 및 냉장고 관리상태		
접객서비스	고객에 대한 접객서비스 현황		
메뉴 품질	판매 메뉴의 품질, 포장 등 점검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추가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 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커피코트】**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당사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가맹점운영권 양도 시 원칙은 포괄적 양수도이며, 이 경우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고 이에 필요한 가맹비 중 신규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양도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경우 보증금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신규로 가맹계약 체결을 희망할 경우 신규계약 절차에 따라 비용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30-31]쪽에 나와 있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 시스템 등 영업 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 1) 귀하가 [커피코트]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순번	품목/단위	공급가격(원)		구분
		상한	하한	
1	별지2 참조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커피코트]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1) 당사는 [커피코트]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요구 또는 권장하여 특정한 거래상대방이나 가맹점사업

자에게 다음과 같은 대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 2) 당사가 [커피코트]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 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음료, 커피 등을 판매하는 휴게음식점업	커피코트	해당없음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가. 로드샵의 경우 점포반경 300m 나. 특수상권 내(백화점, 마트, 아울렛, 놀이공원, 쇼핑몰, 역사, 관공서, 박물관, 공원 등)의 경우 전호에 관계없이 해당 특수 상권 범위 내에 한하여 출점	구체적인 개별 영업지역은 가맹계약서 별첨1에 영업지역 표시

당사는 상기의 영업지역의 설정기준을 바탕으로, 개별 매장에 대한 영업지역은 협의하여 결정한 후 가맹계약서에 별첨을 합니다.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당사와 가맹점사업자 합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커피코트]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커피코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사항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②
2023	100%	0%	0%	0%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10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커피코트]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이며, 가맹계약 갱신 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1]년입니다.

-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37조 제1항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제37조 제1항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37조 제1항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 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37조 제1항
○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37조 제1항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37조 제1항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는 귀하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서를 함께 참고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귀하가 가맹계약서 제22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제32조 제1항
○ 귀하가 기타 본 가맹계약서의 계약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 가맹계약서 제22조 제1항은 물품공급 중단사유로 다음의 내용입니다.	
1. 귀하가 당사의 정당한 시정요구를 6개월에 2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2. 귀하가 노후된 점포설비의 교체·보수의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3. 귀하가 당사와 약정한 판매촉진활동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귀하의 종업원이 규정된 복장을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	
5. 귀하가 제5조 제3항을 위반한 경우	
6. 귀하가 제7조 제1항의 가맹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납된 경우	
7. 귀하가 제8조의 대금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8. 귀하가 제10조를 위반한 경우	
9. 귀하가 제11조를 위반한 경우	
10. 귀하가 제13조를 위반한 경우	
11. 귀하가 제19조 제1항, 제2항, 제5항, 제6항을 위반한 경우	
12. 귀하가 제21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13. 귀하가 제26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14. 귀하가 제27조 제1항, 제2항을 위반한 경우	
15. 귀하가 제28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16. 귀하가 제29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1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32조 제2항
2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제32조 제2항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제32조 제2항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	제32조 제2항

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32조 제2항
6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 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32조 제2항
7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제32조 제2항
8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제32조 제2항
9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제32조 제2항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1개월 전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가맹비 중 신규 교육비를 납입하여야 하며, 양도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았을 경우 추가로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에는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가맹계약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운영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상속인 사후통지 시	모든 권리의무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협의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대리행사	본부 승인 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업무위탁	본부 승인 시 가능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동일 지역 내에서] 귀하가 [커피코트]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 음료, 커피 등을 판매하는 휴게 음식점업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커피코트]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종사자의 집단휴가 또는 영업활동이 곤란하여 가맹점을 7일 이상 정상 영업하지 못할 때에는 가맹본부의 동의를 거쳐 휴업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커피코트]의 종업원은 제한하고 있지 않으나 근무형태는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종업원 수	직접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1명 이상	직접 근무	점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 가족	점주의 장기간 부재 시 가맹본부에 사전통보 요함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비고
위생	담당자 매장 방문 → 매장위생 상태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1회 이상 /분기별	당사의 슈퍼바이저	
회계 처리	담당자 매장 방문 → 각종 장부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기계 및 장비의 관리	담당자 매장 방문 → 기계 및 장비의 점검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물품 등의 관리	담당자 매장 방문 → 물품(원부자재) 보관 및 냉동고,냉장고 상태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접객서비스	담당자 매장 암행방문 → 주문 → 친절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완료			
메뉴 품질	담당자 매장 방문 → 메뉴품질 상태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당사는 감독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맹점 관리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본 표는 감독이 끝난 후 귀하의 서명을 받아 당사와 귀하가 각 1부씩 보관하게 됩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커피코트]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전체 행사	상품 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 50% 중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 따라 산정	광고 계획 공고 → 가맹점의 광고참여 여부 결정 → 가맹점부담액 제시(명세서)	대중매체 광고 명절, Day 이벤트 행사 (전국 행사)
	상품 광고+가맹점 모집광고	광고비의 60%	광고비 40% 중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 따라 산정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개별 행사	가맹점사업자 부담			행사 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종료후 최종 부담금 확정	월별 판촉 행사

[전국단위의 광고일 경우 가맹점부담액은 광고비 중 일부를 광고시행 직전 분기의 각 가맹점사업자의 총매출액 비율에 따라 분담합니다. 지역 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 부분을 분담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하게 필요한 절차는 없습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1) 당사는 귀하의 가맹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 귀하가 가맹계약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당사의 상표 등 영업표지 사용(간판 등 오프라인 사용은 물론 홈페이지, 블로그, 지역정보 기타 일체의 온라인 상 사용을 포함함)을 중지하지 않는 경우, 귀하는 계약종료일 7일 이후부터 그 침해가 중지되는 날까지 1일당 일금 이십만(200,000)원을 위약금으로 당사에 지불하여야 합니다.
- 3) 전항의 경우에 귀하의 형사적 책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 4) 가맹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규정에 관하여는 가맹계약서 제36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아래 각호의 경우 귀하는 제7조 제1항 가맹비의 20% * 잔여개월 수를 당사에 위약금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단, 7호, 8호의 경우는 제7조 제1항의 가맹

비의 40% * 잔여개월수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합니다.

가. 귀하가 제3조 제2항의 영업표지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훼손하여 사용한 경우

나. 귀하가 제5조 제2항, 제3항을 위반하여 영업 비밀을 누설한 경우

다. 귀하가 제8조의 대금결제를 연2회 이상 연체한 경우

라. 귀하가 제10조를 위반한 경우

마. 귀하가 제11조를 위반한 경우

바. 귀하가 제13조 제1항의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거나 제3항의 당사 임직원의 정당한 점포출입을 막은 경우

사. 귀하가 제19조 제1항, 제2항, 제5항, 제6항을 위반한 경우

아. 귀하가 제21조를 위반하여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물품을 가공하거나, 제조한 상품을 판매한 경우

② 아래 각호의 경우 귀하는 제7조 제1항 가맹비의 20% * 잔여개월 수 * 70%를 당사에 위약금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가. 귀하가 제26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나. 귀하가 제31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다. 귀하가 제27조 제1항의 매뉴얼을 위반하거나 제3항의 당사의 정당한 점포환경개선 지시를 거부한 경우

라. 귀하가 제28조 제1항의 매뉴얼 또는 협의사항을 위반한 경우

③ “가맹점사업자”가 본 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을 위반하고, 계약기간 중에 계약의 해지 등으로 계약을 종료(가맹점사업자의 일방적인 가맹계약해지 또는 폐업, [커피코트]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않는 점포로 운영 또는 양도한 경우 등 포함)하는 경우, 계약기간 위반에 대한 위약금으로 금 삼천만원(₩30,000,000)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5)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47일 내외	12페이지 참조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47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제공 - 가맹계약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D-46~45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34~31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30	
가맹금 예치	- 가맹금 예치	D-29(1일)	12페이지 참조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27~25(3일)	12페이지 참조
인테리어 공사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4(1일)	
	- 공사 실시	D-24~5(20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10~4(7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기간을 작성한 것으로써, 협의 과정 또는 점포 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

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커피코트]의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거나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비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각종 집기·장비의 교체 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노후시설 보수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노후 시설 보수 : 40%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	

경우	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는 환수 가능
<분할지급 시 절차> ○ 별도 협의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 자문과 경영 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경영 지도	가. 개업에 관한 모든 업무의 지도 및 원조	가맹본부는 경영지도 계획서 또는 인력파견 통지(경영지도내용, 기간, 인력파견 현황,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결과 제시 또는 인력 파견 결정	가맹본부 필요 시 가맹점사업자와 협의	가맹본부 의 필요 시
	나. 광고 선전 활동에 관한 지도 및 원조		또는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가맹점사업자 부담	또는 가맹점사 업자 요청 시
	다. 조리 및 식자재 관리, 재고관리업무에 관한 지도			
	라. 상품 판매소구점을 창출하는 방법과 신상품에 따른 마케팅 방법 등에 대한 경영지도			
	마. 가맹점 운영에 따른 제반			

	문제점 발생 시 그 해결을 위한 경영지도			
--	---------------------------	--	--	--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커피코트]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신규 교육	별지2 참고	이론 및 실습	가맹점 오픈 전	필수 교육
특별 교육	신 메뉴 가공 종업원 관리 실무 등	이론, 실습	필요 시	필수 교육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커피코트]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비고
신규 교육	1일 4시간~5시간(7일)	가맹비에 포함	최초 계약 시 이수
특별 교육	교육에 따라 다름	실비 정산 후 고지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4. 교육·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당사가 통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이 해지되거나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당사는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이 없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	-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가맹팀(02-596-0105)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239 ~ 4241)** 또는 **가맹거래과 (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의 홈페이지[www.mangosix.co.kr]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 1. 2023년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 2. 2022년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 3. 2021년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 4. 가맹금 예치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08.1.31>

(앞 쪽)

가맹금예치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가맹점)명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
가맹 본부	상호명(영업표지)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
예치가맹금		₩ (금 원 정)
신청인의 계좌		
가맹본부의 계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7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맹금을 예치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치기관의 장 귀하 지점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1. 기계 및 장비 내역, 초도물품 내역]

가. 기계 및 장비 내역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나. 초도물품 내역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기계 및 장비내역과 초도물품 내역은 신상품 등 출시에 따라 내역의 증감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별지2.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서 제공에 대한 수령 확인서

가맹희망자

성 명 : (인 또는 사인)
주 소 :
생년월일 :
연 락 처 :

가맹본부

업 체 명 : (주)피애파트너스 대표이사 표대섭 (인)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24길 31, 804호(성수동2가)
브랜드명 : 커피코트
연 락 처 : **(비공개)**

1. 본인은 “가맹본부”로부터 아래의 각 사항이 명시된 정보공개서를 201 년 월 일 가맹본부의 사무실(실재교부장소)에서 서면(교부방법 기재)으로 교부받아 정보공개서 전부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아 래 -

- (1) 커피코트 정보공개서 최종등록일 : 20 년 월 일
(2) 커피코트 정보공개서 목차
가.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나.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다. 가맹본부 및 그 임원의 범위반사실
라.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마.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바. 가맹사업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사.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아. 교육·훈련프로그램

2. 본인은 정보공개서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의 대리인으로부터 충분히 설명 받았습니다.

① 그렇다 ☐ ② 그렇지 않다 ☐

본인은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수령하는 경우에 귀사의 영업비밀 또는 사업에 대한 중요사항을 유출 또는 제3자에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본인이 모두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가맹희망자 성 명 : 사인 또는 인
생년월일 :

[인근가맹점 현황 제공확인서]

가맹희망자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
 생년월일 :
 연 락 처 :

가맹본부

업 체 명 : (주)피앤파트너스 대표이사 표대섭 (인)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24길 31, 804호(성수동2가)
 브랜드명 : 커피코트
 연 락 처 : **(비공개)**

1. 본인은 가맹본부에게 아래와 같이 계약체결 예정지 인근 가맹점현황 리스트를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

구분		수령여부	
		수령날짜	확인
점포예정지 확정 시	정보공개서와 동시수령		
점포예정지 미확정 시	점포 확정 후 정보공개서와 별도로 추후 수령		

2. 인근 가맹점 현황

No	가맹점 상호	주소	전화번호	비고
1				
2				
3				
4				
5				
6				
7				
8				
9				
10				

202 년 월 일